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6 (29 April – 3 May 2019)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7-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Subject : News Flash of HTW 6

제6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이하 'HTW 6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9년 4월 29일에서 5월 3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HTW 6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모델훈련코스 개발 (의제 3)

☐ 모델훈련코스¹ (총 2 개) 개발 승인

- IGF 코드² 적용 선박의 선장, 해기사, 부원 및 기타 승선자를 위한 기초 훈련 코스 개발
- IGF 코드 적용 선박의 선장, 해기사, 부원 및 기타 승선자를 위한 상급 훈련 코스 개발

2.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증명서 목록 (의제 5)

☐ 선원이 소지해야 할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목록³에 대한 개정 논의

- 배경
 - 항만국 통제관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표B-I/2 내용을 최신화 및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HTW 5차에서 제안되어 통신작업반 구성
- 논의 내용 및 결과
 -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신작업반 결과 보고서를 고려하여 ICS(국제선주협회) 제안 문서를 바탕으로 검토
 - 표B-I/2의 관계조문 V/3조와 VI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에 대한 면허 또는 승무자격증을 갱신하는 경우, 5년마다 의료적성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STCW Reg.I/11 (증명서의 갱신)를 인용한다는 각주 신설
 - 선박보안책임자 교육(STCW 제A-VI/5조, 표A-VI/5)을 이수한 사람은 보안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선원에 대한 교육(STCW 제A-VI/6조, 표A-VI/6-2)과 보안인식 교육(STCW 제A-VI/6조, 표A-VI/6-1)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각주 신설

¹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지침으로 협약 가입국에 권고됨

² 가스 또는 저 인화점 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국제 코드임

³ STCW 협약 제B-I/2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목록임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6 (29 April – 3 May 2019)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7-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보안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선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보안인식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각주 신설
- 검토가 완료된 협약 개정안 채택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제출 예정

3. 1995 STCW-F 협약⁴의 전반적인 검토 (의제 6)

☐ 동 협약의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검토

○ 배경

- Reg.II/3(제한수역에서 어선장에 관한 자격요건)와 Reg.II/4(제한수역에서 당직항해사에 관한 자격요건)을 논의하기 위해 HTW 5차에서 통신작업반 구성하기로 결정

○ 논의 내용 및 결과

- 어장관리 선박(Aquaculture vessel)의 승선을 어선(Fishing vessel)의 승무 경력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다수 회원국은 어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여 포함시키지 않음
- 어선장과 당직항해사의 자격 요건에 영어 활용 능력 포함
- 어선의 대체 승무경력과 관련하여, 주관청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승무경력이 인정되거나 상선의 승무경력도 인정
- 항해사의 기본적인 필수 지식으로 "천문 항해학"을 기존대로 포함

☐ 제한수역 정의 및 협약 적용 대상 기준

- 협약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수역 용어의 정의는 기존 문구처럼 기국이 그 수역 범위를 결정
- 기국이 선박의 길이 또는 총톤수 중, 원하는 단위기준을 선택하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총톤수는 Capetown Agreement⁵와 동일하게 결정
 - 길이 24미터=총톤수 300톤, 길이 45미터=총톤수 950톤

⁴ 어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⁵ 어선 안전을 위한 케이프타운 협정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6 (29 April – 3 May 2019)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7-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동 협약 개정 작업 일정

- HTW 6차에서 재구성된 통신작업반 (HTW 7차<2020.6>에 결과 보고 제출)
- 회기간 작업반 (2020.2.10~2.14)
- 협약 개정 작업 완료 (HTW 8차<2021년 하반기>)
- 최종 개정안 채택 (MSC 106차<2022년 하반기>)

4. 인적 요인의 역할 (의제 7)

☐ 선원 교육에 해양사고 사례 적용 촉진

- 배경
 - 해양사고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을 선원 교육훈련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 개발을 HTW 5차에서 제안
- 논의 내용 및 결과
 - 선원 교육에 사고사례와 교훈 적용에 관한 지침 작성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문서로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침 초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

5. 선원의 전자 증명서 및 문서 사용을 위한 STCW 협약 및 코드 개정안 개발 (의제 9)

☐ 선원의 전자 증명서 및 문서 사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논의 내용 및 결과
 - 선원의 전자 증명서 및 문서 사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예:선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 등) 및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통신작업반 구성이 되었으며, 차기 회의에 결과 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

6. 기타 의제 (의제 12)

☐ STCW 협약 및 코드의 포괄적인 검토

- 논의 내용 및 결과
 - STCW 협약 및 코드 관련하여, 선주와 운용자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사항 (예:선원 자격 및 해기 능력 요건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수준을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6 (29 April – 3 May 2019)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07-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들이 언급됨

- 다수 회원국의 협약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정 논의는 STCW 협약 개정이 MSC 102차(2020.5)에서 신규 작업 과제로 승인된 후 진행하기로 함 - 끝 -

P.I.C:

Jeon Hun-sung / Senior surveyor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Tel: +82 70 8799 8348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audit@krs.co.kr

General Manager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